

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

「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례」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1. 5.

전라남도지사

6 건설업 (특별)경영안정자금

1. 지원규모 : 100억원

- ※ 건설업 경영안정자금은 경기둔화에 따른 2026년도 한시 자금임
- ※ 은행상담 후 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,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(보증서 등) 제공이 있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음.
- ※ 지원규모는 자금별 수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.

2. 지원대상

-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운영 중인 건설업 중소기업으로 건설업(한국산업분류코드 41~42 중 별표1)에 해당하는 사업체

《지원 제외 대상》

- 국세·지방세 체납중인 기업
- 휴·폐업중인 업체
-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% 이상 소유 업체
- 태양광발전업 등 자체 자금조달이 가능한 기업
-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(운영자금) 이용중이거나, 당해연도 추천 후 대출하지 않은 기업(단, 이용한도가 남은 기업은 한도내 이용 가능)
-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접수일 기준

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지원금액(사업분야 : 금융)과 본 신청 건을 포함하여 지원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

※ 금융 중 보증/보험 제외

-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기업 및 자체신용, 담보력이 충분한 우량기업

우량기업 기준

- 신용 및 담보력이 충분한 기업으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
 - 부채비율 300% 이하 기업
 - 연간매출액 100억원 이상 기업
 - 법인기준 자본금 20억원 이상 기업
 - 매년 영업이익이 지속적 성장(최근 3년 동안)한 기업
 - * 1. 사업계획서 제출 시 재무제표 검토하여 검증 확인 후 용자 승인
 - 단, 우량기업이라도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은 실사 후 지원 가능
 - 2. 강소기업, 유망중소기업은 지원 가능

- 기타 자금 지원 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

3. 지원내용

| 용자구분 | 지 원 내 용 |
|------|--|
| 운영자금 | ·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기업 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 - 전라남도 운전자금과 한도 내 신청 가능 |

- ※ '22년 러·우사태, '24년 대우위니아 및 리베프 관련 긴급경영안정자금 이용금액은 한도산정 시 제외
- ※ 2026년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은 한도 산정 시 제외(25년 긴급경안,특정 자금한도 합계 산정)

- 용자한도 : 총 3억원 이내(매출액기준 100% 범위 내 이용 가능)
- 용자기간
 - 운영자금 : 3년(1년거치 2년 분할상환)
- 용자금리 : 연 3.4%(고정금리)

4. 서류접수 : 공고일부터 온라인 접수

-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 시스템(<http://www.jnfund.kr>)을 통해 접수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

5. 구비서류 및 접수처

- 구비서류

① 공통서류

- 가. 자금신청서, 정보이용동의서 각 1부(소정양식)

※ 법인인 경우 반드시 법인도장 날인, 개인사업자 중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전원 도장 날인
나. 대출 취급은행의 대출상담확인서 1부(소정양식)

다.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
- 업종 관련 면허, 영업 신고증 필요 업종의 해당관련 업종 신고증 또는 허가증 1부(사본) 제출 필요

라. 사업장 확인서류 사본 1부

- 자가 : 일반 건축물대장(소유주 확인 필요)
- 임대 : 임대계약서 + 일반 건축물대장(소유자 표시)

※ 법인인 경우, 사업장 소유자가 대표자일 때 법인과 대표자간 임대차계약서

마. 최근 1개년 재무제표(홈택스 또는 회계사 발급) 1부

※ 법인 결산 완료 전인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
하나 전전년도 재무제표 제출 필수

-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(최근 1개년)으로 가능

※ 개인 면세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제출

○ 접수방법 : 온라인 접수

-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(<http://www.jfund.kr>)
- 문의처 : 061-288-3832~4 (기업육성팀)

6. 지원업체 선정

○ 「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」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제외 대상업체 및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융자대상 업체 선정

7. 대출기한

○ 지원 결정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실행을 완료하여야 함.

8. 대출 취급은행

○ 취급은행(8개) : 광주, 산업, 국민, 하나, 신한, 우리, 농협(광주·전남본부), 수협(광주본부)

※ 금융관리은행(광주은행)과 전대 약정 미체결 은행은 취급은행에서 제외

9. 기타사항

① 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「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」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, 2026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계획 에 의하며,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
② 지원자금을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지원 자금을 회수함.

③ 접수 후 심사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.

④ 추천 및 대출 실행 후 거래은행, 상호 및 대표자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신청서(별지 제5호 서식)를 작성 후 자금 시스템을 통해 변경 신청 등록을 해야함

※ <http://www.jfund.kr> (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) → 자금신청내역 확인 → 변경 신청

⑤ 신청 서식은 전남도청,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 및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

※ 전남도청(<http://www.jeonnam.go.kr>) : 분야별 정보 → 일자리·경제 → 기업지원 → 자금지원

※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(<http://www.jepa.kr>) : 자금지원 → 자금지원 공고

※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(<http://www.jfund.kr>) : 정보광장 → 공지사항

⑥ 온라인 접수 후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추가요청자료를 1개월 이내에 보완하지 못할 시 신청이 취소됨

⑦ 상환유예는 적용되지 않으며, 정해진 일정에 따라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져야함

⑧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(061-288-3832~4)로 문의하시기 바람.

[별표 1]

건설업

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411. 건물 건설업 | 4112.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| 4121. 기반조성 건설업 |
| 4122. 토목 시설물 건설업 | 4211.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| |
| 4212. 기반조성 관련 전문공사업 | 4213. 철골, 철근 및 콘크리트 공사업 | |
| 4219. 기타 시설물 축조 관련 전문공사업 | 4220.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| |
| 4231. 전기 공사업 | 4232. 통신공사업 | 4241. 도장, 도배 및 내장공사업 |
| 4242. 유리 및 창호 공사업 | 4249. 기타 건축 마무리 공사업 | |
| 4250.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업 | 4260. 건설장비 운영업 | |

기업정보의 제공 · 활용 및 이용 동의서

전라남도지사·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

□ 본인은 「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(건설업) 신청서」 및 제반서류(사업계획서, 기타 자금 용자에 필요한 서류 일체)에 기재된 기업신용정보를 해당 시·군 및 공공기관의 정책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.

□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, 『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례』 등에 따른 지원업체로 결정될 경우 당사의 정보(업체명, 대표자명, 사업자번호, 지원결정일, 지원사업명, 지원금액 등)를 **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**에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◦ **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**에서 사업 참여(신청 및 지원) 기업정보의 수집·조회 및 활용

-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 2에 따른 기업 소재지, 업종, 매출액, 납입자본금, 자산총액, 부채총액, 영업이익, 당기순이익, 개업일·휴업일·폐업일, 전자계산서 발급액, 전자지급 거래액, 일반연구·인력개발비, 현금영수증 결제금액, 신용카드 결제금액, 신고한 수출 물품의 품명, 품목 번호, 총 신고가격, 목적지, 신고일, 중소기업 지원이력 정보(전화번호, 이메일 등)
- 기업정보는 신청 및 지원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수집

※ **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**에 대한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,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.

□ 전라남도에 자금을 용자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(신청서, 사업계획서, 기타 자금 용자에 필요한 서류 일체)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 하여 용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금지원 결정취소, 조기상환, 신규참여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.

2026년 월 일

기업명 : _____
대표자 : _____ (인)

*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·조회·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,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.

전라남도 중소기업 · 소상공인 육성자금 변경 신청(신고)서

| | | | |
|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지원자금명 | 년 제()차 () 자금 | | |
| 업체명 (사업자등록번호) | (- -) | 대표자명 (생년월일) | () |
| 사업장 소재지 | | 연락처 | 전화) 팩스) H · P) |
| 변경사유 | (상세하게 기재) | | |
| 변경 전 | | 변경 후 | |
| 상기와 같이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변경 신청합니다. 2026년 월 일 신청인 (인) 전라남도지사 ·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| | | |
| □ 붙임서류 • 은행(지점) 또는 대출취급기한 변경시 - 육성자금추천결정통보서 사본 1부 • 대표자 또는 주소변경시 -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(말소사항포함) 각 1부 | | | |

※신고대상 : 대표자 변경사항, 상호·소재지의 변경, 휴·폐업, 담보 종류의 변경, 기타 업체의 변동사항
 ※승인대상 : 법인 전환, 주생산업종의 변경, 계약대상·시설의 변경, 추천기한·취급은행 변경

문의 : 061)288-3832 / 접수 : www.jnfund.kr